

# 고용·산재보험

## 2025년도(귀속)

# 보수총액신고 안내



**! 신고기한 | 2026년 3월 16일(월)**

한 눈에 보는 보수총액신고	3
보수총액신고 체크포인트	4
전자신고	6
서면신고	9
보수총액신고서 작성방법	10
예수인 보수총액신고 & 보험료 조회	13
공단 지원사업 및 제도 안내	14

### Contents



보수총액 신고  
안내동영상



## 보수총액신고서 접수 방법

① 전자신고(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로그인, 6p 전자신고 참조)

② 서면신고(보수총액신고서 사진보내기)

전자 신고 및 팩스 접수가 어려운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휴대폰 문자전송(MO서비스) 또는 앱(모바일 사진 보내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MO서비스

- ① 작성한 보수총액신고서를 휴대폰화 사진촬영
  - ② 문자 → 받는사람(신고서 오른쪽 위 MO번호 입력) → 보수총액신고서 사진 첨부 → 보내기 → 수신 성공 알림 확인
- ※ 유의-해당서비스는 문자 전용 번호로 통화 연결은 되지 않음(사진 첨부 및 메시지 입력 가능)



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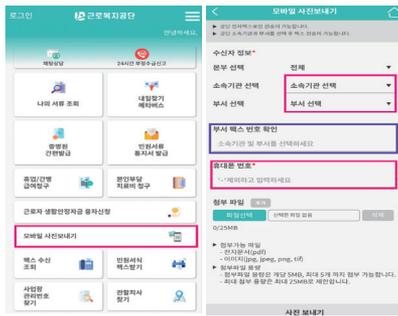
QR코드



(고객)QR코드 스캔 →  
(고객)지사/부서선택, 전송 →  
(공단)신고서 수신 및 접수

### 모바일 사진 보내기

- ① 근로복지공단 공식앱 설치(우측 QR코드 스캔후 설치) → ② 별도의 로그인 없이 “모바일 사진보내기” 클릭 → ③ 소속기관 선택 → 부서(가입지원부 또는 가입지원1부(가입지원2부)) 선택 → ④ 발신자 휴대폰번호 입력 → ⑤ 파일선택 → 카메라선택 → 작성한 보수총액신고서 사진촬영 후 확인 → ⑥ 사진보내기 클릭



QR코드



## 한 눈에 보는 보수총액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 가능

## 2025년도(귀속) 보수총액 신고하기

## 전자신고

<https://total.comwel.or.kr>  
로그인→자주찾는서비스→보수총액신고



## 서면신고

우편 동봉된 보수총액신고서



## 2025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입력



임시저장 → 검증 → 접수



신고내역확인



우측 상단 기재된 FAX/MO 접수  
우편/방문접수



전자팩스 접수확인



2026년 3월 16일(월)까지 접수 / 정산보험료는 4월분 정기고지에 합산 고지

## 보수총액신고 체크포인트

### 보수총액신고는 꼭 해야되나요?

- '25년도에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6년도에 납부할 월보험료(월평균 보수)를 산정하기 위해 꼭 신고해야 됩니다.

### 신고 대상 보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고용·산재보험 신고대상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그 범위 나열)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상 보수 관련 항목 >

▶ 신고대상 보수 = ①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 ②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 근로소득

① 「소득세법」 상 비과세를 제외한 근로소득

- ⑯계 [= ⑬급여 + ⑭상여 + ⑮인정상여 + ⑮-1~⑮-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등]

②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 근로소득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15조	S01	⑬-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의2	U01	⑮-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4제6항	Y02	⑮-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Y03	⑮-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Y04	⑮-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⑬-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재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 → **고용·산재 보수 포함** (단,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수에 비해당)

✓ (⑮-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님 → **고용·산재 보수 포함**

✓ (⑮-14~⑮-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취득은 개인 출자와 법인 출연금에 의한 것이 있으며, 과세이연 선택 시 자사주 인출금은 인출연도의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세를 비과세(50%, 75%, 100%)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 상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은 아님 → **고용·산재 보수 포함**

- 다만, 조합원 개인이 출자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므로 **출자 당시 산재·고용보험 보수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인출 시 보수에서 제외**

※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보수에 포함

## 퇴직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수총액신고는 재직중인 근로자만 대상이며, 신고일 이후 퇴사했을 경우 보수총액정산과 퇴직정산의 적용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적용대상	처리내용	비고
퇴직정산 우선 적용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통상 4월15일) 이전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b>보수총액신고서</b> 의 보수총액으로 <b>(재)정산되지 않음</b> ※ 신고순서 무관	퇴직정산 또는 보수총액정산 우선 적용에 관계없이 상실된 근로자는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로만 보수총액 수정 가능
보수총액정산 우선 적용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업무 마감일(통상 4월15일) 이후에 퇴직정산이 처리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b>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b> (상실신고서의 보수총액으로 재정산되지 않음)	

##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 보수총액신고는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미신고 시 월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 보수총액 미신고 시 보험료징수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우리공단에서는 조사 자료로 보험료를 직권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국세청 근로소득 대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매년 7월(전전년도 수정-경정분)과 9월(전년도 정기분)에 그 사실을 안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보수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부과(퇴직정산자 포함)하고 있으니 보수총액신고 시 보수 누락 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88-0075)**,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정산보험료 산정 방식

- (월보험료 부과방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 4에 따라 월단위 산정
  - 월의 초일(휴일무관)부터 근무하거나 퇴사(전근)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해당 월의 월보험료 부과
  - 월의 초일이 아닌 날에 근무시 월보험료 미부과
- (정산보험료 부과방식) 기존 개인별 연간보수총액에서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원단위 절사하던 방식에서 월단위로 환산 후 월별 정산보험료를 산정한 후 부과된 월보험료의 차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 ※ 기존방식대비 개인별 산재보험료 최대 110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220원, 고안직능 110원) 최대 330원 감소. 단, 일용 근로자의 월보험료는 근로내용신고된 개인별 보험료에서 원단위 절사, 정산보험료는 연간 일용근로자 전체 보험료 총액에서 원단위 절사되므로 보수총액 금액이 동일하여도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자신고

## 1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로그인

- 로그인 후 메인화면 [자주찾는 서비스] → [보수총액신고]를 클릭하면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 가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 정보조회 | 전자통지 | 증명원 신청/발급 | 업무상질병판정 | 심사청구 | 보수월액서비스

사업자 등록번호 로그인(공동인증) | 사업주 주민번호 로그인(간편인증, 공동인증)

정부 통합로그인

개인 | 사업자

사업자 통합로그인

개인 | 사업자

사업장:  대표자  대리인  중소기업 가족중사자

사업대행:  대표자소속직원

의뢰기관:  대표자  대리인

개인:  근로자(일반, 산재, 노무제공자, 제출인)  국민연금(간대차금급상사상규구공공합의조임/직소요영급(사신)·유족

주민등록번호: 041067 -

개인정보 이용 및 공유사항 정보처리 동의

인증: [개인] 간편인증서  
내역, 카탈, 공용기명 등의 전자서명으로 로그인

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를 인증서로 로그인

※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전자신고 대상이며,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 각 5천원 경감(4월보험료가 각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1 보수총액신고 신고하기(작성방식 선택 : 화면입력방식)

- Ⓐ 화면입력방식 선택 → Ⓑ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 Ⓒ 보수총액 신고대상자 자료조회 → Ⓓ 상용근로자 연간보수총액 입력 → Ⓔ 입력정보 엑셀저장 → Ⓕ 일용근로자 연간보수총액 입력 → Ⓖ 일시납신청 선택 → Ⓖ 총당신청 선택 → Ⓗ 임시저장 → Ⓙ 신고자료 검증 → Ⓚ 접수

작성방식 선택:  화면입력방식  엑셀파일 불러오기

신고절차 펼치기 | 건실기계조사 신고방법

보험년도 *	<input type="text" value="2025"/>	사업장관리번호 *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button" value="Q"/>
사업장명칭	<input type="text"/>	대표자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value="--- - --- - ---"/>	팩스번호	<input type="text" value="--- - --- - ---"/>
작성자명 *	<input type="text"/>	연락처 *	<input type="text" value="--- - --- - ---"/>

① 보수총액 착오신고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다운로드



➤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는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① 퇴직정산한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일반근로자(일반예술인) 보수총액

입력정보 건 (E) 입력정보 엑셀저장 (F) 부과부도 구분 설명

연번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간접근무	산재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 종사지코드	고용		(고용) 연간보수총액
				취득일 (전입일)	전보일 (전출일)			취득일 (전입일)	전보일 (전출일)	
1	730104-		<input type="checkbox"/>	2020-07-01				2020-07-01		

>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보수총액

일용-단기예술인 조회

(F) 25년 일용근로자 고용한 경우 작성

>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9 제4항에 따라 월보험료를 초과하는 정산보험료의 경우 2분할하여 고지됩니다. 정산보험료 일시납을 원하실 경우 아래사항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  일시납 신청

> 과납보험료 총당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임금재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총당 신청합니다.

과납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앞으로 발생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총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 동의  비동의

(I) 임시저장 (J) 신고자료 검증 (K) 접수 초기화

2-2 보수총액신고 신고하기(작성방식 선택 : 엑셀파일 불러오기)

- (A) 엑셀파일 불러오기 선택 → (B)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 (C) 신고대상자 다운로드(일반근로자/자활근로자 모두 다운) → 다운로드한 엑셀파일에 보수총액 입력 → (D) 작성파일 불러오기 → (E) 입력정보 엑셀저장 → (F) 일용근로자 연간보수총액 입력 → (G) 일시납신청 선택 → (H) 총당신청 선택 → (I) 임시저장 → (J) 신고자료 검증 → (K) 접수

작성방식 선택  화면입력방식  엑셀파일 불러오기 (A) 신고절차 편치기 (I) 건설키계조종사 신고방법

보험년도 *	2025	사업장관리번호 *	----- Q (B)
사업장명칭		대표자	
전화번호	□ - □ - □	팩스번호	□ - □ - □
작성자명 *		연락처 *	□ - □ - □

(I) 보수총액 착오신고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다운로드

(C) 일반근로자(일반예술인)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자활근로자 및 노조초임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

>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는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근로자(일반예술인) 보수총액

(I) 퇴직정산한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작성파일(일반근로자(일반예술인)) 불러오기 (E) 입력정보 엑셀저장 (F) 부과부도 구분 설명

연번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부과부도 구분	건설·법목적 근무이력자	산재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 종사지코드	고용	
					취득일 (전입일)	전보일 (전출일)			취득일 (전입일)	전보일 (전출일)

※ 검증 시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오류는 접수 가능한 오류이나,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오류는 접수가 불가능한 오류로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 서면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신고기한은 2026. 3. 16(월)까지입니다.  
팩스번호 : 0505-\*\*\*\*\*  
MO번호 : 1644-\*\*\*\*

##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2025)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작성자명 :	전화 :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일: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종생산물( ) :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①-1 건설, 별목업 근무이력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전입일)	전보일(전출일)	②연간보수총액(원)	중사지코드	취득일(전입일)	전보일(전출일)	③연간보수총액(원)		
1				Y( )									
2				Y( )									
3				Y( )									
4				Y( )									
5				Y( )									
6				Y( )									
7				Y( )									
8				Y( )									
9				Y( )									
합계													

④ (2025)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 ) (해당시 v 표시) ※ 아래 박스 안에는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뒤쪽참조)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⑥ 산재보험	⑧ 고용보험		그밖의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만해당)	⑦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⑨ 일용근로자 전체	⑩ 1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한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⑨ 매일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⑥, ⑧) 및 그 밖의 근로자(⑦, ⑧) 수(상용근로자는 제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⑩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⑪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 ) 선납총당, ( ) 반환(반환계좌: 은행, 계좌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뒤쪽)

⑫ "자활근로조사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①-1 건설, 별목업 근무이력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③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전입일)	전보일(전출일)	②연간보수총액(원)	④-1 중사지코드	취득일(전입일)	전보일(전출일)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				Y( )									
2				Y( )									
3				Y( )									
4				Y( )									
합계													

※ 보수총액신고서 양식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사업장 정보와 신고대상 근로자가 인쇄되어 발송됩니다. **작성방법(10p)**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신 후 서식 우측 상단에 기재된 팩스번호로 **2026.3.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자명, 전화번호도 기재오망)

※ 사업장 정보(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총액신고서 작성방법

## 1 상용근로자 연간보수총액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 보험료 부과구분	①-1 건설, 벌목업 근무이력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전입일)	전보일(전출일)	② 연간보수총액(원)	종사코드	취득일(전입일)	전보일(전출일)	③ 연간보수총액(원)
김수*	85****-*****		Y( )	2020.05.01.				2020.05.01.		
강백*	67****-*****		Y( )	2024.07.01.				2024.07.01.		

(건설·벌목업 근무 이력자) 2025년도에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과 보수총액신고 대상 사업장에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체크 (토달서비스 엑셀파일 신고 시에는 해당란에 'Y' 기재)합니다.

(연간보수총액) 2025년도에 발생한 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합니다. (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에 체크한 근로자는 건설현장 등 자진신고 사업장으로 신고할 보수를 제외하고 기재)

※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된 사업장의 "건설현장내 건설기계조종사" 보수총액 산정 방법

산재보험 보수총액	고용보험 보수총액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연도 총 보수에서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총액 신고	건설공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산정 ▶공사도급계약 - 건설현장 근로기간의 보수를 제외한 보수총액을 신고(산재 보수총액과 동일) ▶건설기계임대계약 -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보수총액을 신고

해당자는 "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란에 체크(V) 표시, 전자신고(엑셀업로드)시 "건설·벌목업 근무이력자"란에 "Y" 입력  
※ 사무직 근로자, 건설현장 외에서 근로하는 건설기계조종사는 소속 사업장에 발생한 전체 보수총액을 신고

### ※ 유의사항

- ▶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에서 대표자로 연도 중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자격실(고용종료)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대표자의 배우자 및 동거(직계 포함) 가족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 ▶ 전근 근로자 및 해외파견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전근 근로자는 전근 전 사업장과 전근 후 사업장의 **보수를 구분**하여 전근 전·후 사업장으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 ▶ 휴직근로자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합니다. (단, 휴직 이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합니다.)

## 2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④ (2025)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근로자 없음( ) (해당시 V 표시)

※ '25년도 중에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근로자 외 **신고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괄호안에 체크(v)표시)

## 3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 연간보수총액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산재 및 ⑥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보수를 각각 기재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보수총액을 기재합니다.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⑤ 산재보험	⑥ 고용보험	
		⑥ 일용근로자 전체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안·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아래 해당되는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보수합을 기재합니다.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보험	⑥ 고용보험	
		⑥ 일용근로자 전체	⑥-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었거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65세 이후 10일 이상(일용→일용) 근로 공백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65세 이후 일용보수액
- ▶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H2, E9) 중 고안-직능만 적용된 기간이 존재하는 일용근로자의 보수

※ 공단에 신고된 일용근로내용확인고서 상 해당자가 있는 경우 작성 칸(⑥-1)을 구분하여 안내드리며, 실제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또는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 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있으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작성 칸이 없는' 사업장은 고객센터(☎1588-0075)로 **칸이 생성된 서식을 요청** 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⑦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⑧산재보험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연간보수총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그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산재만해당)	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	----------------------------------	-----------------------

※ 일용근로자 VS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구분	설명	적용범위	예시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일 또는 시간단위의 고용계약 ▶ 임금 형식으로 보수 지급	산재	당연적용	식당에서 일급을 받으며 10일간 주방 업무를 하는 근로자
		고용	당연적용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산재	당연적용	편의점에서 1일 1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근로자
		고용	적용제외(단,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당연적용)	

#### 4 일용근로자(단기예슬인) 및 그밖의 근로자 수(상용근로자는 제외)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 수) 일용근로자(단기예슬인) 및 그밖의 근로자 보수를 기재한 경우 그 근로자의 수를 매월 말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하며, 상용근로자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⑨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⑥, ⑥) 및 그밖의 근로자(⑦, ⑧) 수(상용근로자는 제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	----	----	----	----	----	----	----	-----	-----	-----	----

#### 5 정산보험료 일시납 및 과납보험료 반환 신청

⑩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 ⑪ 정산 후 과납보험료를 ( ) 선납충당, ( ) 반환 (반환계좌: ) 은행, 계좌번호: )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정산보험료가 4월분 월별보험료 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분할 고지되며, 분납이 아닌 일시납을 원하는 경우 **일시납 신청에 체크(V)** 합니다.

(과납보험료 반환 신청) 정산 결과 발생한 과납보험료를 앞으로 낼 보험료에 **충당을 원하는 경우는 선납충당에 체크(V)** 하고 **반환을 원하는 경우는 반환 계좌를 기재**합니다. (토달서비스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과납금환급계좌신청에서 입력합니다)

※ 법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인 명의, 개인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 명의 계좌만 반환 가능

### 6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노조전임자"의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합니다. (보험료 부과분 부호가 54, 56, 58인 근로자만 별도 기재)

**12**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1보험료 부과구분	1-1건설, 발목업 근무이력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3연간보수총액(원)	
					취득일 (전입일)	전보일 (전출일)	2연간보수총액(원)	3-1 종사지코드	취득일 (전입일)	전보일 (전출일)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				Y( )									
2				Y( )									
3				Y( )									
4				Y( )									
합계													

▶ 실업급여와 고안·직능사업 중 어느 한 사업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사업에 보수를 기재하고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 기간만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같이 적습니다.

\*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산재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 부과가 제외되는 근로자 구분)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60시간 미만 근로자,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2	O	X	X	X	현장실습생(산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파견자
56	X	X	O	X	별정직·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중 실업급여 임의가입자)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수급자)
60	O	O	X	O	고용허가외국인(당연적용대상)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가 다른 근로자는 「피보험자·고용정보내용 정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정보 정정 후 새로운 보수총액 신고서를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보수총액신고 & 보험료 조회

## 1 2025년(귀속) 예술인 보수총액신고 관련 유의사항

(예술인 보수총액) "예술인의 보수총액"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25%)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text{보수총액 산정 산식} = \{(\text{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text{비과세소득}\} \times 75\%$$

- 개인별 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에 따라 보험료가 상한액(월 보험료 512,440원, 연간보험료 6,149,28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을 개인별 보험료로 적용합니다.

(단기예술인 보수총액신고) 보험료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을 개인별 보험료로 적용해야 하므로, 단기 예술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 연간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기예술인 신고 노력 또는 보수액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또는 단기노무제공내용 정정신고 → 처리완료 → 보수총액신고

※ 단기예술인 신고대상이 누락된 경우 ①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보수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단기노무제공내용 정정신고(예술인)』

## 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사항

구분	내용		관련근거
월보험료 부과	일반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상 월평균보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
	단기 예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상 월보수총액	
보수총액신고 대상 금액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①)에서 비과세소득(②), 경비(③) 등을 제외한 금액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5
필요경비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5%		
필요경비③ 공제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①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② × 25%③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3호
부과 하한액	월 단위 기준보수 800,000원		
부과 상한액(2025년)	월보험료 512,440원, 연간보험료 6,149,280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8호

## 1 근로자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토달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납부내역 발급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고용·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1월(근로자) 연말정산용(고용보험)** 단, 자진신고사업장(건설·벌목)의 부과내역 제외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 → 건강/고용보험 조회

**5월(개인사업주) 종합소득세신고용(산재·고용보험)**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

## 공단 지원사업 및 제도안내

### 1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기준 안내

구분	세부 기준	
지원대상 사업 규모 ①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대상 보수 수준 ②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지원수준	고용보험료의 80% 지원(지원금 상한액 있음) ③	
지원요건	(근로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취득이력 없는 신규가입자(상용은 일용이력 제외)에 限하여 지원	
지원기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지원제외 대상	재 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

- ① (두루누리)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
- ② (예술인·노무제공자) 둘 이상의 사업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합산보수액 기준(예술인·노무제공자 각각 판단)
- ③ 1인당 최대 지원금액:(근로자 사업장) 37,720원 (=사업주 지원금 21,160원 + 근로자 지원금 16,560원)  
(노무제공자·예술인 사업장) 29,440원 (=사업주 지원금 14,720원 + 종사자 지원금 14,720원)

### 2 보수 원클릭 서비스 안내

보수원클릭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각종 조세, 사회보험 신고 사무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의 인사 정보, 임금정보를 입력·관리하면서 각종 사회보험 신고 서식, 소득세 신고 서식 등을 손쉽게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 주요기능 ▶ (사회보험 취득·상실신고) 공단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통합 접수  
▶ (근로소득세신고) 신고 서식을 생성하여 국세청 제출(신고)  
▶ (임금정보관리) 임금명세서 등 서식 저장 및 출력
- ② 사용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https://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우측상단 「보수원클릭서비스」 메뉴 클릭

### 3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 서비스 안내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사무처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무법인, 세무법인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여 보험사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 청 절 차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위탁신청서  
▶ (서면) 보험사무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보험사무 위탁신청서” 제출  
▶ (사무대행기관 찾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 4 산재보상 부정수급 신고 안내

365일 24시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 핫라인

신고전화

상담사

시문자신고

시음성신고

1551-5777



홈페이지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산재부정수급신고

365일 24시간  
산재부정수급신고 바로 가기

**부정수급 사례**

- ✔ 근로자가 아니어도 근로자로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행위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상태를 조작하는 행위
- ✔ 실제 간병을 하지 않음에도 간병급여를 받는 행위
- ✔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청구행위
- ✔ 요양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휴업급여를 받는 행위
- ✔ 보험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평균임금을 높게 조작하는 행위
- ✔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행위
- ✔ 브로커 등 부당한 제3자 개입을 통한 산재 보험급여 편취 행위

**불법행위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

부당이득환수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형사처벌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해당자 및 관련자는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진신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징수(배액징수 규정 면제)

**신고인은 어떻게 보호되고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신고인 신상정보 보호	신고인의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호, 익명신고 가능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

장점 1

사업주는 비용절감!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추가로!  
재정지원 20%

월 281만원(최저임금 130%)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

- 1인당 재정지원 : 최대 28만 1천원
- 지원 근로자 수 : 최대 30명까지
- 지원기간 : 3년
- 지원금액 : 1년 최대 843만원, 3년 최대 2,529만원

장점 2

수수료 면제로 사업주는 비용절감 혜택을 추가로!  
수수료 0원

'26년 가입 시 3년간 수수료 전액 면제!

(연간 수수료 기준, 단위: 원)

적립금	1천만원	5천만원	1억	5억
푸른씨앗 (기준 0.2%)	0원	0원	0원	0원
타사 퇴직연금 (평균 0.6%)	6만원	30만원	60만원	300만원

장점 3

안정적인 수익률!

'25년 연 수익률 8.67% 누적 수익률 24.62%

('22년 9월 ~ '25년 12월)

※ 푸른씨앗은 OCIO 체제로 전담운영기관(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

전담운영기관

No.1. 공적연기금 운영기관  
**삼성자산운용**

글로벌 연금 전문가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장점 4

'표준계약서'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가입 가능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미나

퇴직연금규약서 작성·신고 의무 면제!

+

트미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

## ⑥ 폐업사업장 미청구 퇴직급여 청구 안내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 사유로 퇴직하였으나 공단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몰라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급여의 조회 및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자(근속기간 1년 이상 가입자) ※ 타 금융기관 퇴직연금 가입자 해당 금융기관 문의
대상조회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홈페이지( <a href="https://pension.comwel.or.kr">https://pension.comwel.or.kr</a>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바로그기 → 퇴직연금 가입자 정보확인(메인화면 우측하단) 2. 퇴직연금제도(DC/IRP)바로그기 → 나의퇴직연금 적립금 확인(메인화면 우측하단)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가입자가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신청가능 ※ 제출서류 별도

# 2026년 더 쉽고 편리한 Easy-Quick 전자신고 이벤트

<https://total.comwel.or.kr>

보수충액 및 보험료 신고는 쉽고, 편리한 토탈서비스로!  
5인 미만 사업장 및 최초 전자신고 할 경우 경품 당첨확률 UP!!

1200명



커피 & 베이글 기프티콘



행사  
기간

✓ 보수충액신고 2026. 2. 1.(일) ~ 2026. 3. 16.(월)

✓ 보험료 신고 2026. 2. 1.(일) ~ 2026. 3. 31.(화)



근로복지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한 국민 권익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패·공익 신고 및 이해충돌신고는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http://www.comwel.or.kr))국민소통 → 신고센터 → 공익침해행위 신고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http://www.clean.go.kr)),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